

#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내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사무를 보조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 모집인원 및 채용기간 등

채용분야	인원	근무기간	비고
행정사무보조 (절차사무보조)	4명	2026. 1. 19.(월) ~ 6. 12.(금)	

## 2. 담당직무

- 가. 각종 신고·신청 사무처리 보조
- 나. 선거관리 장비·용품, 선거관리전산프로그램 등 관련 선거업무 보조
- 다. 민원전화 접수 등 기타 행정업무 보조

## 3. 보수 및 근무조건

- 가. 보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90,085원 지급
  -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등 추가 지급
- 나. 근무조건 : 주5일, 1일 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 ※ 업무 사정에 따라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실시
- 다. 기 타
  - 4대 사회보험 가입
  - 1주일간 5일 출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 4.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가. 최종면접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나.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라. 선거사무보조원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 선발 우대사항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등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마. 가점사항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 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 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5. 원서접수

가. 접 수 처 :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나. 접수기간 : **2026. 1. 5.(월) ~ 1. 11.(일)** (토요일·공휴일 제외 정규 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등기우편(천안시 서북구 오성1길 16) 또는 전자메일(adj3505@nec.go.kr)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

라. 제출서류(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으로 제출 시 붙이익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위 가. '접수처' 에서 교부 또는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
- 자기소개서(지원서에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지원서에 포함)
- 선발 우대 증명서(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사본(해당 시)

○ 가점 대상 증빙 서류 사본(해당 시)

제출대상	제출서류
가점 대상자	① 법정가점 대상자(지원서 접수시 제출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가점 비율 필수 기재 ②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지원서 접수시 제출 가능)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6. 전형 및 일정

구 분	서류심사(1차)	면접심사(2차)	
	서류 합격자 발표	면접일자	합격자 발표
일 정	2026. 1. 12.(월)	2026. 1. 14.(수)	2026. 1. 16.(금)
발표 방법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위원회 홈페이지 합격자 게시로 같음		

※ 면접장소: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1층 대회의실

## 7.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가.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8명 이내)를 선정

## 8.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 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나.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다.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 신청 가능(전자우편 제출분 제외)
-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마.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반드시 지참
- 바.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사.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041-562-1390)로 문의

- 붙임 1. 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끝.

2026 년 1 월 5 일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